

#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총평 : 이경 ]

행정학의 이론과 현실의 제도 중,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내용의 세부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오류가 있기는 하나, 「정탁금지법」은 2018년 서울시 7급에서도 출제된 바 있으므로, 최근 기출되었던 주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깊게 공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문제는 기본이 되는 중심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문별 문항분포>

|      |    |    |    |    |    |    |
|------|----|----|----|----|----|----|
| 구분   | 총론 | 정책 | 인사 | 조직 | 재무 | 자치 |
| 문항 수 | 5  | 3  | 4  | 2  | 3  | 3  |

일 년에 두 번 이상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의 장점입니다. 혹시, 시험을 망친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해서 다음번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모든 과목의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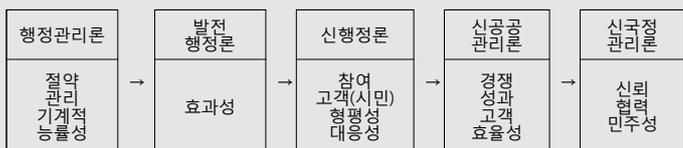
문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총론-1> 행정이론-가치

- ① [O] 행정관리론은 업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이다. 당시 유행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가치를 받아들여 '절약과 능률성'을 추구했다.
- ② [X]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 속에서 행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알도 마리니, 프레데릭슨 등의 학자가 주창하였다. 이들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으며, 형평성(Equity), 시민의 참여, 시민에 대한 대응성 등을 주장했다. 탈규제는 정부 영역을 줄이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및 이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는 가치이다.
  - ▶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X] 신공공관리론(NPM)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이로 인한 정부실패를 이유로 영미국가에서 나타난 정부개혁흐름이다. 공통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며, 시장에서의 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공사행정일원론 : 정치행정일원론). 즉, 시장처럼 경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고 하였으며, 고객을 중시하였다. 생산성, 능률성, 효율성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 민주성을 중시하는 것은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등을 강조하는 이론에서이다(공사행정일원론 : 정치행정일원론)
  - ▶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X] 뉴거버넌스론(NG)은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다자적 협력과 협치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시민'을 중시하며 신뢰, 협력 등을 중시하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공사행정일원론 : 정치행정일원론).
  - ▶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주요 행정가치의 변화>



문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조직-1> 조직이론-현대적 조직이론

- ④ [X] 대리인은 주인에 비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주인은 정보가 더 적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으로 대리인은 주인을 속이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인다.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불량품질의 차를 좋은 차라고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거나(역선택), 주인인 시민 모르게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의 행동(도덕적 해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황을 없애거나(평판체크, 정보공개 등) 대리인이 스스로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보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인센티브 지급 등).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더욱 강화되어 대리인실(역선택+도덕적 해이)이 심해진다.
  - ▶ 대리인 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 ① [O] 구조적 상황이론(상황적응론)은 상황에 따라 조직의 구조나 관리과정 등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가령, 정적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나타나고 동적 환경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 본다.
- ② [O]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 관리자의 자율적·능동적·전략적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환경임의론이다. 조직관리자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적 변화나 적응적 흡수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
- ③ [O] 자원의존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으로,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획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관리자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환경의 제약조건을 완화한다.

<현대 조직이론>

|  |                                 |
|--|---------------------------------|
| 환경결정론  | 환경임의론                           |
| 구조적 상황이론(상황적응론)<br>조직군 생태학<br>조직 경제학(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 전략적 선택이론<br>자원의존이론<br>공동체 생태학이론 |

문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총론-2] 공공선택론 - 일반적인 특징

- ④ [X]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선택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다(완전한 합리성)' 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완전한 합리성(rationality)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색하고 그 중 최적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간은 정보와 시간이 부족하고 인지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기 어렵다.
  - ▶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 ① [O] 투표방식, 정치제도 등의 정치적(비시장적 의사결정) 영역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으로 제도의 합의를 등을 연구한다.
- ② [O] 오스트롬(Ostrom) 등의 학자는 단독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통적 정부를 비판하고, 분권화된 다중공공장치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한적이지만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 ③ [O] 전통적 관료제는 집권화+독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체이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시하므로 이를 비판한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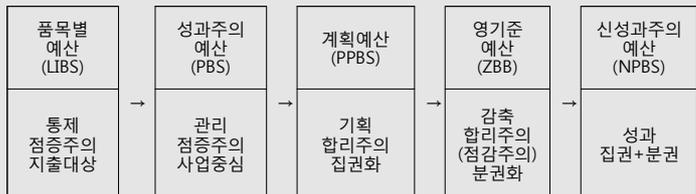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품목별예산제도                      ② 영기준예산제도
- ③ 계획예산제도                      ④ 성과주의예산제도

[재무-1] 예산편성제도 - 영기준예산제도의 특징

- ② [O] 영기준 예산(ZBB : Zero-Based Budgeting)은 모든 자출예산서를 0점 기준으로 검토해 최적 대안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된 예산편성제도이다. 중간 관리자나 하급 관리자에게 참여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매년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므로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다.

<주요 예산편성제도의 변화>



문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2]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 ② [X]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에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 ▶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① [O] 중앙부처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전략기획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출한도 내에서 중앙부처의 재량이 확대되므로 분권화가 촉진된 셈이다.
- ③ [O] 중앙부처에게 자율성을 주게 되면 권한이 확대된 것이며, 권한이 확대되면 책임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 ④ [O] 기재부는 여전히 부처의 사업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

문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재무-3]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재정기능

- ④ [X] 머스그레이브는 재정의 경제적 기능(배분, 재분배, 경제안정화)을 강조했다. 관료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조한 것은 알렌 슈ick(A.Schick)이다.
  - ▶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 ① [O] 배분기능이다. 재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② [O] 재분배기능이다. 재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 ③ [O] 경제안정화기능이다. 재정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정하고 성장을 촉진한다.

<재정의 기능>

|                  |                             |
|------------------|-----------------------------|
| 머스그레이브(Musgrave) | 경제기능 : 배분기능, 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
| 슈ick(Schick)     | 행정기능 :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



문 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④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정책-2] 정책집행-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

④ [O] 버먼은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집행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책집행의 문제가 정책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이해한다. 그는 집행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거시집행과 미시집행으로 구분하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policy)과 집행조직(organization) 사이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자체가 성공적인 집행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미시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① [X] 버먼은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로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apta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validity)을 들었다. 이 중 '채택'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시적 집행'이다.  
▶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X] '행정'은 정책결정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문의 설명은 '채택'이다.  
▶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X] 거시적 집행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집행조직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책분야의 전 참여자(행정관료, 법원, 이익집단, 지방정부, 개인 고객 등)의 활동을 포함한 집행이다. 미시적 집행구조의 제도적 환경은 서비스전달조직에만 한정된다. 거시적 집행구조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으로 구성된다. 미시적 집행구조는 동원(mobilization), 전달자의 집행(deliverer implementation),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으로 구분된다. 동원은 집행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적응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으로, 표준운영절차와 조직의 적응이 발생한다. 제도화는 조직절차의 일부분으로 정형화되는 것이다.  
▶ 거시적-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문 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지방자치-1]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법

③ [O]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규정하고 있다.

① [O]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교부세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해당한다.

② [O]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에 해당한다.

④ [O]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징수되면서 기존의 종합토지세(지방세)에 의한 세수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총액에 해당한다.

※ 특별 교부세 :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 국가적 장려사업에 대한 보전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에 해당한다.

문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인사-1] 징계-강임

④ [X]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강임은 현재의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직위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을 말한다. 직제개편이나 예산삭감 등으로 일부 직류와 정원이 개폐되었을 경우, 해당 직위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나 조직 전체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강임할 수 있다. 또는 공무원 스스로가 희망할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직급을 한 계급 아래로 내리는 징계는 '강등'이다. 강등시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단,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① [O]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및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② [O]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등에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④ [O]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 등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해제된 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는다.

문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2] 주민참여제도-주민의 감사청구**

- ④ [X] 주민의 감사청구요건은 사도의 경우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사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O] 주민의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이다. 이 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 ②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③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정책-3] 정책집행-표준운영절차**

- ③ [O]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조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놓은 업무처리절차이다. 표준운영절차는 내부 규범으로 작용하므로, 공평하고 일관된 행정을 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 ④ [X] 엘리슨(Allison)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합리적 행위자모형(model 1), 조정과정모형(model 2), 관료정치모형(model 3)으로 구분된다. 모델 1은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모델 2는 준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합리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표준운영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모델 3은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엘리슨(Allison) 모형 비교>**

|     | 합리모형(model 1) | 조직과정모형(model 2) | 관료정치모형(model 3)       |
|-----|---------------|-----------------|-----------------------|
| 조직관 | 유기체           | 하위조직 연합체        | 독립행위자 집합체             |
| 권력  | 최고층이 보유       | 하위조직이 분산소유      | 개인의 정치적 자원            |
| 목표  | 조직 전체의 목표     | 조직전체+하위조직 목표    | 조직전체+하위조직+ 개별행위자들의 목표 |
| 결정  | 최고지도자의 명령     | SOP             | 정치적 게임(타협, 흥정, 지배 등)  |
| 일관성 | 매우 강함         | 약함              | 매우 약함                 |

- ▶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 ② [X] 표준운영절차는 개별상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X]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표준운영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일관된 행정이 가능하다.  
▶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문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총론-4]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

- ① [O] 고위직 관료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권력극대화를 추구한다.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지만, 던리비(Dunleavy)는 예산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위직 관료는 하위직 관료와 달리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기능)은 외부로 이전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참모기능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 ② [X]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관청(기관)을 형성할 동기를 가진다.  
▶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X] 관청예산이 증대하면, 관청을 형성한 고위직 관료들은 여유재원을 확보하거나 위신이 높아지는 등의 편익을 누리지만 중하위직 관료는 이로 인한 이익을 누리지 않는다. 중하위직 관료는 핵심예산이 증가했을 때 편익을 누린다.  
▶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X] 관료들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문 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총론-5] 규제의 유형**

- ③ [X]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형식의 규제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의 규제이다. 예외는 원칙보다 많을 수 없으므로,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① [O]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 재분배, 보호적(protective) 규제, 경쟁적(competitive) 규제로 구분하였다. 보호적 규제는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는 규제이다. 즉,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이다. 경쟁적 규제는 많은 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이다.
- ② [O] 경제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 진입 및 퇴출 제한, 가격 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규제는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신장하는 목적을 가진 규제다.
- ④ [O] 규제는 주체에 따라 정부가 규제하는 직접규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정부 및 민간이 함께 관리하는 공동규제로 구분된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순응성을 확보하거나 정부의 집행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된다.

문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방소방공무원
- ② 자치경찰공무원
- ③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지방자치-3] 지방공무원**

③ [O]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2. 특정직 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위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문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 내용               | 종전(2016. 9. 8.) | 개정(2018. 1. 17.) |
|------------------|-----------------|------------------|
| ① 유가증권           | 5만원             | 5만원              |
| ② 축의금, 조의금       | 10만원            | 5만원              |
| ③ 음식물            | 3만원             | 5만원              |
|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 5만원             | 10만원             |

[인사-2] 부패·청탁금지법

① [O]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한다. 유가증권은 종전 규제대상 선물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최근 폐지되었다.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이다. 여러 가지를 같이 받은 경우에게별 물품의 가액을 합산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요약 >

| 구분   | 정의  | 가액   |
|------|---|------|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 5만원  |
|      |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
|      |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 10만원 |

- ▶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축의금+화환·조화 또는 선물+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한다.
-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

문 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인사-3] 고위공무원단-역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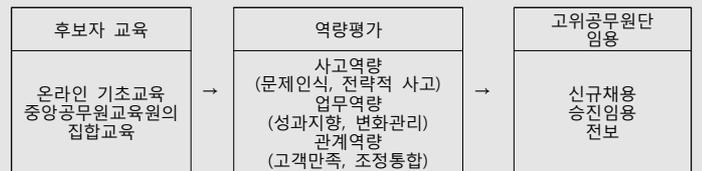
- ㄱ [X] 역량이란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을 말한다.
-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 ㄴ [O] 역량평가(competency assessment)는 다수의 평가자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등의 핵심역량에 대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집행과제를 평가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이 때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평가한다.
- ㄷ [O] 고위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6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역량별 평가 점수의 평균이 '보통'인 평균 2.5점 이상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핵심역량 및 평가기법>

| 역량구분 | 사고역량                                  | 업무역량       | 관계역량       |
|------|---------------------------------------|------------|------------|
| 핵심역량 |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 성과지향, 변화관리 | 고객만족, 조정통합 |
| 평가기법 | 1.1 역할 수행, 1.2 역할 수행, 집단 토론, 서류합 기법 등 |            |            |

ㄹ [X]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된다.

<고위공무원단 신규진입절차>



문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 ③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 ④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인사-4] 유연근무제도**

④ [X] 재택근무 시 초과근무 시간을 공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액분 지급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등은 정상 근무자와 동일한 절차(사전승인 등)를 통해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스마트워크형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원격근무지의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O]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구분된다. 재택근무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이며, 스마트워크 근무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이다.

원격근무제 가능업무는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독립적인 업무, 업무실적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조사 및 단속업무이다. 원격근무제 불가업무는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 수행시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점검·장비점검·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 수행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서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④ [O] 유연근무제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시간제),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유연근무제 형태>**

| 유형     | 세부형태                              | 개념   |
|--------|-----------------------------------|--|
| 시간제 근무 |                                   |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
| 탄력근무제  |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
|        | ○ 시차출퇴근형                          |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br>- 매일 같은 출근시간 (07:00 ~ 10:00 선택)<br>-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 (07:00 ~ 10:00 선택)     |
|        | ○ 근무시간선택형                         | ▶ 1일 4~12시간 근무<br>▶ 주5일 근무   |
|        | ○ 집약근무형                           | ▶ 1일 10~12시간 근무<br>▶ 주3.5~4일 근무  |
|        | ○ 재량근무형                           |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br>*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 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
|        | ○ 재택근무형                           |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        | ○ 스마트워크 근무형                       |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